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김재진 의원

나. 의안번호 : 제2360호

다. 발의일자 : 2025.02.03

라. 회부일자 : 2025.02.05

### 2. 제 안 사 유

- 관련 법 및 동 조례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을 현행화하고 업무 전산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며, 용어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관련 법 및 동 조례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을 현행화함(안 제19조 및 제29조, 안 별표 1).
- 나.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함(안 제33조).
- 다. 용어,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함.

## 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건축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및 관계법령 기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현행화 하고 일부 조문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행정 효율성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9조는 소방용수 등에 대해 일반용 최초단계의 요율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 에 따라 2014년 3월 24일부터 ‘고시원’을 ‘다중생활시설’로 명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29조는 여전히 ‘고시원’으로 명시되어 있음.

따라서 안 제19조 및 제29조와 같이 동 조례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 에 맞춰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일 것임.

다만, 서울아리수본부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개정사항을 상당 기간 미반영하고 있는바, 조례 현행화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- 그 밖에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순화, 띄어쓰기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며, 안 별표 1과 같이 일반용 급수업종 구분을 업종 통합<sup>1)</sup>에 맞춰 단순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.

---

1) 공공용, 일반용 → 일반용